

의안번호	2220934
의 퇴 인	서천호 의원
회 답 일	2026.09.28.
추 계 번호	26G438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,
 도서지방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,
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,
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,
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,
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,
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,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, 농어업 경영 및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, 영구임대주택·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, 인지세 면제,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985억원 등 2027~2032년 6년간 총 8,903억원(연평균 1,48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자동차세,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합계	-985	-1,670	-1,748	-1,827	-1,909	-765	-8,903	-1,484
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5년 연장(안 제66조)	-	-390	-408	-427	-447	-467	-2,139	-428
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5년 연장(안 제68조)	-	-248	-260	-272	-284	-297	-1,360	-272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(안 제106조제1항 후단)	-5	-5	-5	-5	-5	-	-26	-5
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3호)	-75	-79	-83	-87	-91	-	-414	-83
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)	-2	-2	-2	-2	-2	-1	-11	-2
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12호)	-4	-4	-4	-4	-4	-	-18	-4
인지세의 면제 5년 연장(안 제116조)	-831	-872	-914	-956	-1,000	-	-4,572	-914
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(안 제121조의23제10항)	-69	-70	-72	-74	-76	-	-362	-72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와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,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2	안 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3	안 제106조제1항제1호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4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3호	○ 농·어업 경영 및 농·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5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4호의5	○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6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12호	○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7	안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	- 농·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8	안 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제10항	○ 농협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	-
2	안 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	-
3	안 제106조제1항제1호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○	-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3호	○	—
5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4호의 5	○	—
6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12호	○	—
7	안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	○	—
8	안 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제10항	○	—
9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1항제2호	×	공장·학교 등의 급식용역 공급가액 정보 부재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66조)

□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

- 징수기준에 따라, 개정안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
□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(2022~2026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
나.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68조)

□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

- 징수기준에 따라, 개정안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
□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5년(2022~2026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
다.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 후단 등)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연장된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7~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
라. 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3호)

- 최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실적 및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마.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)

- (추계 방법) ‘난방용역비 × 부가가치율 × 세율 10%’로 추계
 - (면제 대상) 영구임대주택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 받는 난방방식의 주택¹⁾
 - (난방용역비) ‘대상 주택 수 × 1호당 평균 난방용역 공급가액’으로 추정
 - 난방용역비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집계되고 있으므로, 이를 전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비로 환산해 활용
 - 주택 1호당 평균 공급가액은 임대주체·면적·지역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대상 주택 수 및 평균 난방용역비는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(부가가치율)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되,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바.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2호)

- 동 제도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
1) 가스 등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난방을 수행하는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

사. 인지세 면제 연장(안 제116조)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
 - 개정안의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작성분 문서부터 발생
-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(2024~2026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
아. 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21조의23제10항)

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의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66조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, 조합원 및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
 -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
 -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해 농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면제,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5%의 저율과세 적용
 -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감면, 농지 및 초지 외에 농작물재배업·축산업·임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

-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2년 379억원에서 2026년 481억원(잠정치)으로 변동
 -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: 2022~2026년(잠정)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(잠정)	기간 평균
계	379	342	350	396	481	389.6
- 소득세	169	161	186	200	275	198.2
- 법인세	210	181	164	196	206	191.4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이 경상GDP 성장률(전망)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5년(2022~2026년)의 연평균 감면액(389.6억원)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 - 2022~2026년간 연평균 감면액: 소득세 198.2억원, 법인세 191.4억원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8~2032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
계	389.6	408.2	427.0	446.7	467.3
- 소득세	198.2	207.7	217.2	227.3	237.7
- 법인세	191.4	200.5	209.8	219.5	229.6

(3) 추계결과

-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389.6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2,138.9억원(연평균 427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연장의 세수효과: 2028~2032년, 소득세 및 법인세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68조)	389.6	408.2	427.0	446.7	467.3	2,138.9	427.8

나.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68조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,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 및 거주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
 -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등
 -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이 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감면, 농지 및 초지 외에 농작물재배업·축산업·임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
 -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 대하여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면제,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배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
-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2년 278억원에서 2026년 264억원(잠정치)으로 변동
 -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(2022~2026년)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5]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: 2022~2026년(잠정)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(잠정)	기간 평균
계	278	240	224	231	266	247.8
- 소득세	5	5	4	4	2	4.0
- 법인세	272	235	220	227	264	243.6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이 경상GDP 성장률(전망)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5년(2022~2026년)의 연평균 감면액(247.8억원)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 - 2022~2026년간 연평균 감면액: 소득세 4.0억원, 법인세 243.6억원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8~2032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
계	247.8	259.6	271.6	284.1	297.2
- 소득세	4.0	4.2	4.4	4.6	4.8
- 법인세	243.6	255.2	267.0	279.3	292.2

(3) 추계결과

-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247.8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,360.4억원(연평균 272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연장의 세수효과: 2028~2032년, 소득세 및 법인세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1항 후단 등)	-247.8	-259.6	-271.6	-284.1	-297.2	-1,360.4	-272.1

다.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106조제1항 후단 등)

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5억원, 2026년 6억원(전망) 등으로 나타남

[표 10]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감면실적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p
감면실적	5	5	5	5	6

주: 2026년은 전망치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2~2026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치인 5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2026년 전망은 신고·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5억원 등 2027~2031년 총 26억원(연평균 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6조제1항 후단)	-5	-5	-5	-5	-5	-26	-5

라. 농어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3호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·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및 농어업법인 경영

개선 목적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²⁾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

- (위탁영농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재배 대행·축산물 사육 대행을 하는 법인의 활동(농작업의 100% 위탁)
- (농작물대행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업의 일부(100% 미만)인 논밭 갈기, 작물심기, 농약뿌리기, 가지치기,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

□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은 2020년 1,814억원에서 2023년 2,094억원, 2024년 3,198억원으로 증가³⁾

- 최근(2020~2023년)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4.9% 수준
 - 전년대비 증가율이 50%를 상회한 2024년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

[표 12]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²⁾ (2020~2023)
위탁영농·농작물대행 매출액 ¹⁾	1,814	1,518	2,000	2,094	3,198	4.9%
(전년대비 증감률)	-	(-16.3)	(31.8)	(4.7)	(52.7)	-

주: 1) 「농업법인조사」(농림축산식품부)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기준

2) 전년대비 증가율이 50%를 상회한 2024년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‘매출액 × 관련 부가가치율 × 부가가치세율(10%)’로 추계

- 추계기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은 최근 (2020~2023년)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추세(4.9%)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- 추계기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(20.31%)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한국은행 「기업경영분석」 상 ‘농업」[A01]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 적용

2) 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, 「농업법인조사 보고서」(2023년 기준), 2025.5

3) 면세사업자인 영농·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동 제도에 따르는 조세 지출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 않음

[표 13]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: 2022~2024년

(단위: %)

구분	2022	2023	2024	연평균
농업	20.49	18.96	21.49	20.31

자료: 한국은행,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7년 75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414억원(연평균 8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309억원(연평균 62억원)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05억원(연평균 21억원) 감소 예상됨

[표 14]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전체	-75	-79	-83	-87	-91	-414	-83
- 부가가치세(74.7%)	-56	-59	-62	-65	-68	-309	-62
- 지방소비세(25.3%)	-19	-20	-21	-22	-23	-105	-21

마.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)

- (주택 수) 난방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구임대주택 수는 7.3만호로 추정

- 전체 영구임대주택 수는 2022~2024년 연평균 22.3만 호로 집계
 - LH(주택관리공단 관리) 및 지자체·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을 모두 포함

[표 15] 전체 영구임대주택 수: 2022~2024년

(단위: 호)

구분	2022	2023	2024	연평균
전체 영구임대주택(A) ¹⁾	220,711	224,116	225,410	223,412

주: 1) 전국의 유형별(지역난방·중앙난방·개별난방) 및 임대주체별(LH 및 지자체·지방공사) 주택을 모두 포함하며, 재고주택 수 기준으로 집계됨

자료: 국토교통부 제공자료

- LH 임대(주택관리공단 관리) 대상 영구임대주택 중에서, 지역난방 유형의 주택은 2022~2024년 연간 4.7만호로 전체 주택(14.5만호)의 32.8% 비중

[표 16]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수: 2022~2024년

(단위: 호, %)

구분	2022	2023	2024	연평균
지역난방 주택(B)	47,498	47,498	47,498	47,498
전체 주택(C) ¹⁾	144,691	144,691	144,691	144,691
지역난방 주택의 비율(D=B/C)	32.8	32.8	32.8	32.8

주: 1) 전체 주택은 중앙난방, 개별난방, 지역난방 유형을 모두 포함

자료: 국토교통부 제공자료

-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,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지역난방 주택 수를 7.3만호 수준으로 추정
 - ‘전체 영구임대주택 22.3만호 × 지역난방 주택 수 비율(32.8%, 주택관리공단 관리 주택 기준)’로 산출

□ (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) 영구임대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 공급가액은 24.4만원으로 추정

-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 1호당 평균 난방용역비 공급가액은 2022~2025년 연평균 24.4만원 수준

[표 17]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(지역난방 유형)의 난방용역비: 2022~2025년

(단위: 호, 백만원, 만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
지역난방 주택 수(B)	47,498	47,498	47,498	47,508	47,501
난방용역비 공급가액(E)	10,834	13,367	10,991	11,194	11,597
주택 1호당 공급가액(F=B/E)	22.8	28.1	23.1	23.6	24.4

자료: 국토교통부 제공자료

- (부가가치율) 난방용역 공급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22~2024년
연평균 12.11% 수준

[표 18]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현황

(단위: %)

	2022	2023	2024	연평균
연료용 가스, 증기·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¹⁾	9.22	11.02	16.08	12.11

주: 1)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, 증기·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포함
자료: 한국은행,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

- (감면액)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
감면액은 2027년 2.2억원 수준으로 추계
- ‘대상 주택 수(7.3만호) × 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(24.4만원) × 부가가치율
(12.11%) × 세율(10%)’로 추정

[표 19]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시 감면액(귀속 기준)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감면액	2.2	2.2	2.2	2.2	2.2

- (세수효과)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
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
2027년 1.6억원 등 2027~2032년 6년 간 총 10.8억원(연평균 1.8억
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
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정
 - 2027~2032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8.1억원, 지방소비세
(25.3%)는 총 2.7억원 감소 예상

[표 20]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효과(정수 기준): 2027~2032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1.6	-2.2	-2.2	-2.2	-2.2	-0.5	-10.8	-1.8
- 국세(74.7%)	-1.2	-1.6	-1.6	-1.6	-1.6	-0.4	-8.1	-1.3
- 지방소비세(25.3%)	-0.4	-0.5	-0.5	-0.5	-0.5	-0.1	-2.7	-0.5

바.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06조제12호)

□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~2024년
연평균 4억원 수준

[표 21]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연평균
조세지출액	4	4	3	4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4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18억원(연평균 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추계기간 최근의 조세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2027~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4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5억원 감소 예상

[표 22]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1항제12호)	-4	-4	-4	-4	-4	-18	-4
- 국세(74.7%)	-3	-3	-3	-3	-3	-14	-3
- 지방소비세(25.3%)	-1	-1	-1	-1	-1	-5	-1

사. 인지세 면제 연장(안 제116조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농어민 소득 기반 유지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경감하고자,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

[표 23] 개정안의 인지세 면제 대상 문서

구분	수혜자	인지세 면제 대상문서	비고
제5호	농협, 수협, 신협 등 조합원	해당 조합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	용자한도 1억원
제6호	농협, 수협, 신협 등 조합원	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금·적금증서·통장	어린이예금통장 포함
제7호	—	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·이전·변경·소멸을 증명하는 증서	
제9호	—	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및 건축자재 외상구입 관련 서류	
제11호	—	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	
제19호	창업중소기업	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	

- 인지세 면제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뚜렷한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,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경상GDP 성장률(전망)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4~2026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(830.7억원)이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
[표 24] 인지세 면제실적: 2024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(잠정)
인지세	819	819	854
－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	92	87	87
－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	727	732	767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-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4~2026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830.7억원

[표 25] 개정안에 따른 인지세 인지세 감소효과 추정치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인지세	830.7	830.7	830.7	830.7	830.7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·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인지세는 2027년 830.7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4,572억원(연평균 91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인지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농·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6조)	-830.7	-872.0	-913.7	-955.8	-999.8	-4,572.0	-914.4

아. 농협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(안 제121조의23제10항)

(1) 추계방법

-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액은 2022년 60억원에서 2025년 65억원으로 연평균 2.7% 증가

[표 27]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: 2022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감률
부가가치세 감면액	60	69	70	65	2.7

자료: 재정경제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결과

-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69억원 등 2027~2031년 5년 간 총 362억원(연평균 7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(2.7%)이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제

[표 28]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69	-70	-72	-74	-76	-362	-72
- 국세(74.7%)	-51	-53	-54	-55	-57	-270	-54
- 지방소비세(25.3%)	-17	-18	-18	-19	-19	-92	-18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